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5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더불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안 제1조)

- 제1조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으로 변경

나.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예외 사항 반영 (안 제5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11. 21. ~ 11.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3.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6조 및 제66조의3, 「<u>법제업무 운영규정</u>」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p> <p>1. <u>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u></p> <p>2.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3. <u>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p> <p>②·③ (생략)</p>	<p>제1조(목적) ----- ----- 「<u>법제업무 운영규정</u>」 제20조 제4항----- ----- ----- -.</p> <p>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 ----- ----- ----- ----- 「<u>행정절차법</u>」 제41조 제1항 -----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참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참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한현진 (☎ 3153-8526)